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본부 '여가 진흥' 업무 및 '현대미술관 운영 지원·관리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본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과의 명칭을 디지털소통정책과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감사'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와 '박물관 디지털화' 업무를 추가하고, 박물관정보화과의 명칭을 디지털박물관과로 변경하는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 업무 및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정보화' 업무를 삭제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업무'와 '박물관 문화사업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공무직 노무관리를 위해 행정주사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수 있도록 명시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과장 직위를 경력개방직위로,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장 직위를 일반 직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체육국 1개과(스포츠유산과)의 평가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국립현대미술관 1개과(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채용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2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라 기계운영8급 정원 및 사무운영 9급 정원 각1명을 공업또는시설8급 과 행정9급 각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서 신설('18.12.31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20.1.7 홍보고객지원과, 전시2과, 연구기획출판과)에 따라 현대미술관에 두는 4급 정원의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직제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

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정책관·예술정책관·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문화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 및 제47조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예술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7항(중전의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를 각각 “문화,

여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민문화지수·지표”를 “국민문화지수·지표, 여가지수·지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민문화의식”을 “국민문화의식, 여가의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민의”를 “국민의 여가의 질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및 조정
- 23. 여가 관련 통계의 수립·분석·유지에 관한 사항
- 2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 2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2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 2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2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사항
- 29.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제13항(중전의 제9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2항)제7호 중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을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한다.

- 17.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제10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디지털소통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지원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기획과·뉴미디어소통과·정책포털과·디지털소통제작과”를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지원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디지털소통기획과·정책포털과·디지털소통제작과”로, “분석과장·디지털소통기획과장·뉴미디어소통과장·디지털소통제작과장”을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디지털소통기획과장·디지털소통제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뉴미디어소통과장”을 “디지털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디지털소통관으로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소통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통지원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디지털소통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4조제1항 중 “체육국장 및 체육협력관”을 “체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체육협력관은 직제 제17조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광정책국장 및 관광산업정책관”을 “관광정책국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광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관광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관광산업정책관은 직제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박물관정보화과·시설관리과”를 “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로, “박물관정보화과장”을 “디지털박물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사에 관한 업무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정보화과장”을 “디지털박물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 및 감사”를 “예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직문화 혁신”을 “조직과 정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시·교육·유물관리 등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40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제4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를

삭제한다.

14.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의4제3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15.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

제4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을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공무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항 단서, 제8항 단서 및 제9항 단서 중 “3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한다.

제15항 후단 중 “6명을”을 “10명을”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0조제1항·제24조제1항·제28조·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사관·디지털소통관·국립국어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국립국악원장 및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제4조제1항·제10조제1항·제24조제1항·제28조·제36조·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감사관·디지털소통관·국립국어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국립국악원장·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진주박물관장 및 청주박물관장”을 “청주박물관장”으로 한다.

7의2. 제22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박물관과장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25”를
“2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3”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3의2 중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2
5”를 “2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3”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14의 조직 4)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 ① <u>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7조(기획조정실) ① <u>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② <u>직제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③ <u>정책기획관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u>		

<신 설>

② ~ ⑨ (생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2,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제8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⑫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 가등급-----

-----.

②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정책관·예술정책관·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문화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 및 제47조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예술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⑦ -----
-----.

1. 문화, 여가, -----

2. 문화, 여가, -----

3. 문화, 여가, -----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4. <u>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 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 체제 구축</u>	4. <u>문화, 여가, -----</u> ----- -----
5. <u>국민문화지수·지표의 개발 및 조사</u>	5. <u>국민문화지수·지표, 여가지 수·지표-----</u> -----
6. <u>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연 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u>	6. <u>국민문화의식, 여가의식 ---</u> -----
7. <u>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 상에 관한 사항</u>	7. <u>국민의 여가의 질 및 -----</u> -----
8. ~ 21. (생략) <u><신설></u>	8. ~ 21. (현행과 같음) 22. <u>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 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및 조정</u>
<u><신설></u>	23. <u>여가 관련 통계의 수립·분 석·유지에 관한 사항</u>
<u><신설></u>	24. <u>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 무 총괄</u>
<u><신설></u>	25. <u>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 영에 관한 사항</u>
<u><신설></u>	26. <u>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 항</u>
<u><신설></u>	27. <u>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22. (생 략)

④ ~ ⑧ (생 략)

⑨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신 설>

⑩ (생 략)

<신 설>

2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사항

29.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현행 제22호와 같음)

⑧ ~ ⑫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⑬ -----
-----.

1. ~ 16. (현행과 같음)

17.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⑭ (현행 제10항과 같음)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 ·

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

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24. 삭 제

25. 삭 제

26.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

⑪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삭 제>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조정 및 추진
12. 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3. 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15. 여가지수·지표의 개발 및
조사
16. 여가의식 실태조사·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17. 국민의 여가의 질 향상에 관
한 사항
18.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
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9.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분
석·유지에 관한 사항
20.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
무 총괄
21.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
영에 관한 사항
22.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

항

23.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에 관한 사항

24.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
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5.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감
독에 관한 사항

26.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
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
항

27.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과 관련된 업무

⑫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
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8.·9. (생 략)

⑬ (생 략)

제10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⑫ -----
-----.

1. ~ 6. (현행과 같음)

7.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
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8.·9. (현행과 같음)

⑬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10조(국민소통실) ① -----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가등급-----

-----.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
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으로하며,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소통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
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
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통지원관은 직제 제13조제
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
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디지털소통관은 직제 제13조
제3항제2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②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 · 소통협력과 · 소통지원과 · 콘텐츠기획과 · 여론과 · 분석과 · 디지털소통기획과 · 뉴미디어소통과 · 정책포털과 · 디지털소통제작과를 두되, 소통정책과장 · 여론과장 · 소통협력과장 · 소통지원과장 및 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 · 디지털소통기획과장 · 뉴미디어소통과장 · 디지털소통제작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⑨ (생략)

⑩ 뉴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⑪ · ⑫ (생략)

제14조(체육국) ① 체육국장 및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소통정책과 · 소통협력과 · 소통지원과 · 콘텐츠기획과 · 여론과 · 분석과 · 디지털소통정책과 · 디지털소통기획과 · 정책포털과 · 디지털소통제작과-----

----- 분석과장 · 디지털소통정책과장 · 디지털소통기획과장 · 디지털소통제작과장 -----

⑦ ~ ⑫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⑭ (현행 제9항과 같음)

⑬ 디지털소통정책과장-----

1. ~ 5. (현행과 같음)

⑮ · ⑯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제14조(체육국) ① 체육국장-----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⑧ (생 략)

제15조(관광정책국) ① 관광정책
국장 및 관광산업정책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

②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
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체육협력관은 직제 제17조제
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
다.

④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제15조(관광정책국) ① 관광정책
국장-----

-----.

②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
광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관광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

<신 설>

② ~ ⑨ (생 략)

제20조(행정운영단) ① (생 략)

② 행정운영단에 행정지원과 · 박물관 정보화과 · 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 정보화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④ 박물관 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관광산업정책관은 직제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⑪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20조(행정운영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지원과 · 디지털박물관과 · 시설관리과 -----

--- 디지털박물관과장-----

-----.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감사에 관한 업무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디지털박물관과장-----
-----.

1. 삭 제 2. <u>예산 및 감사에 관한 업무</u> 3. <u>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u> 4. 삭 제 5. <u>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u> 6. · 7. (생 략) <u><신 설></u> ⑤ · ⑥ (생 략)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 ② (생 략)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생 략)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⑤ · ⑥ (생 략)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u>예산</u>----- 3. <u>조직과 정원의 관리</u>----- <u><삭 제></u> 6. · 7. (현행과 같음) 8. <u>전시 · 교육 · 유물관리 등 박 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 획 수립</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 스템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u>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 5. (생략) 6. 삭제 <u>7.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u> 8. ~ 10. (생략) ⑧ (생략)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 ② (생략)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14. (생략) ④ (생략)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12.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u> 13. 삭제 <u>14.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u>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8. ~ 10.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3의2. (현행과 같음) <u>14.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u> <u>15.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u>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1.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8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7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

----- 7퍼센트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공무직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2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6명,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 1명(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담당)]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생략)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⑦ (생략)

7퍼센트

⑤ (현행과 같음)

⑥

7퍼센트

⑦ (현행과 같음)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 2와 같다.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 2와 같다.

⑩ ~ ⑭ (생략)

⑮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⑧ -----

---. -----

----- 7퍼센트 -----

-----.

⑨ -----
-----.

----- 7퍼센트 -----

-----.

⑩ ~ ⑭ (현행과 같음)

⑮ -----

---. -----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⑯ ~ ⑱ (생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제10조제1항·제24조제1항·제28조·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사관·디지털소통관·국립국어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국립국악원장 및 국립민속박물관장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 10명을 -----

-----.

⑯ ~ ⑱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제4조제1항·제10조제1항·제24조제1항·제28조·제36조·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감사관·디지털소통관·국립국어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국립국악원장·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
② -----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제23조제1항에 따른 <u>진주박 물관장 및 청주박물관장</u> 8의2. ~ 14. (생 략) 제49조(평가대상 조직)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 라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평가 대상 조직은 별표 16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 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 로 정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 호, 2018. 12. 3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2 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 다.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22조제7항에 따른 어린 이박물관과장</u> 8. ----- <u>청주박물 관장</u> 8의2. ~ 14.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대상 조직) ① (현행 과 같음) <u><삭 제></u>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 호, 2018. 12. 3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 ----- -----2022년 12월 31일---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u>		<u>2</u>	+1
	.		.		.	
	.		.		.	
행정서기보			<u>25</u>		<u>26</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3</u>		<u>2</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u>	<u>2</u>	+1
•	•	•	
•	•	•	
행정서기보	<u>25</u>	<u>26</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3</u>	<u>2</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9조 관련)

<u>현 행</u>			<u>개 정 안</u>		
조직	정원	평가기간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1명 (고위공 무원단 나급)	2021년 6월 30일까지	1)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1명 (고위공 무원단 나급)	2021년 6월 30일까지
.	.	.	.	.	.
4) 체육국 스포 츠유산과	1명 (6급 1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체육국 스포 츠유산과	1명 (6급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	.	.	.	.	.